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7
------	-----

2007. 9. 11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7년 8월 17일
-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2007. 9.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택국장 김효수)

- 전통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지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받았으나, 등록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경우 보조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용자지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7. 4. 5 ~ 4. 25)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60('07.1.16)호] 권고사항임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현행 한옥지원조례로는,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용자 지원받은 자가 등록유효기간 전에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및 용자금 환수가 가능하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에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2007년 1월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어 이를 시정코자 등록유효기간 내 한옥을 서울시에서 매입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용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 서울시는 외관수선은 최대 3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5년간 등록을 유지토록하며, 내부수선은 최대 2천만원까지 용자를 지원하고, 용자금 상환 일까지 등록을 유지토록하고 있음
2001년 이후 총 397동의 등록한옥에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였고, 36채의 한옥을 매입하였으며 등록유효기간 내에 서울시가 매입한 사례는 1건임.
- 서울시가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한옥을 등록유효기간 내에 매수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으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한 한옥을 다시 서울시가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에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 요지 : 특이사항 없음
-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해당 없음

270 (제168회-제4차)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